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속

韓国語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이하 「취학 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를 국가가 학생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대여형 장학금과는 달리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입 1 학년생은 2 회(4 월과 7 월)의 신청수속이 필요합니다(7 월 수속은 매년 필요합니다).

지급대상의 요건

- 보호자의 「시·정·촌민세의 과세 표준액×6%-시·정·촌민세의 조정 공제 금액(정령지정 도시에 시민세를 납세하고 있는 경우 조정 공제 금액에 3/4 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산정 기준액이 304,200 엔 미만일 것.
연수입으로는 910 만엔 정도이지만, 부양 등의 조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4 월은 전년도 분의 액수, 7 월은 금년도 분의 액수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합계액으로 합니다.
- 고교에 재학한 기간이 통산 36 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
정시제·통신제 과정의 경우는 48 개월입니다. 국립·공립·사립 모두 해당합니다.
- 신청서와 「まいなんばんかーど マイナンバーカード, 개인번호카드」의 복사본 등을 기한 내에 학교에 제출할 것.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업료는 연간 118,800 엔으로, 4 분기로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취학 지원금의 수급에는 심사가 있습니다. 4 월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7 월 상순(예정)에 학교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수속에 필요한 「まいなんばんかーど 마이ナンバー카드, 개인번호카드」의 복사본 등에 대하여

①개인번호가 기재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복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まいなんばんかーど 마이ナンバー카드, 개인번호카드」 뒷면
- 개인번호가 기재된 「じゅうみんひょう 住民票, 주민표」 등(3 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개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 등 전원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호자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 재학 기간 중의 「まいなんばんかーど 마이ナンバー카드, 개인번호카드」 또는 기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まいなんばんかーど 마이ナンバー카드, 개인번호카드」 복사본 등의 제출은 다음에 기재한 소득 증명 서류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생활보호 수급 세대인 분은 「せいかつほごじゅきゅうしょうめいしょ 生活保護受給証明書, 생활보호 수급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生活保護受給証明書, せいかつ ほ ご じゆきゆう しょうめいしょ 생활보호 수급증명서」는 3 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이 필요합니다. 복사된 것은 무효입니다. 제출된 원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상기 ②의 소득 증명 서류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다음번에 신청 시 개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 등 전원의 서류) 또는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받기 위한 수속

장학을 위한 급부금(이하 「장학급부금」)은 보호자 전원(부모양쪽)의 「도·부·현 소득할주민세액」과 「시·정·촌 소득할주민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0 엔인 세대(이하 「비과세 세대」) 또는 생활보호 수급 세대에게, 수업료 이외의 교육에 관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수속은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도·부·현에서 연 1 회(7 월) 행합니다.

지급액(연액)은 생활보호 수급 세대가 32,300 엔, 비과세 세대가 84,000 엔입니다.

단, 비과세 세대에서 부양받고 있는 형(오빠), 누나(언니)가 고등학생의 경우 또는 비과세 세대로 고등학생 외에 15 세 이상 23 세 미만의 중학생 이외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129,700 엔입니다. 이 경우 가족의 부양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취학 지원금과 장학급부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보호자 전원이 비과세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학급부금을 이체할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0 년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위해 비과세 세대에게, 통신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추가적으로 10,000 엔을 지급합니다. 가정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학습의 통신비로 사용할 것을 서약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에서 배부되는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단, 생활보호 수급 세대 또는 통신비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비과세 세대인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덧붙여, 2020 년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신청에 더하여, 아래 2 가지 제도를 새로 수립했습니다.

①신입생에게 앞당겨 급부: 신입생이 있는 세대로 2019 년도 비과세 세대에게, 장학급부금의 일부를 조기 지급합니다. 이 제도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통상적인 신청과는 별개로 신청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가계 급변 세대에 대한 지원: 2020 년도 비과세가 아닌 세대로, 올해 들어 보호자 전원의 수입이 비과세 세대 수준으로 줄어든 세대에게, 장학급부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통상적인 신청의 대상이 아닌 세대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아래 4 개 종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입이 줄어든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이 줄어들기 이전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2020 년도 과세증명서(보호자 전원의 서류)
 3. 수입이 줄어든 이후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자 전원의 서류)
 4.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증 복사본 또는 부양가족 인원수가 기재된 과세증명서
- 이 제도를 적용 받는 분은 통신비의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약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문의처: 학교 또는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시설재무과(06-6941-0351)